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5.17.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5월 8일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5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1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12년 5월 17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선우근

가. 제안이유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1) 안 제4조제4항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에 대하여 직급별 또는 직종별로 제한 항목을 두었으나, 모든 항목을 삭제하고 단일화하여 신규임용 최저연령을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하도록 개정함.

(2)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에 의해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3) 안 제5조에서는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위원회로 하되 다만 5급 상당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체 또는 시·도 인사위원회에 의뢰 등 선택적으로 실시하며, 별정직 임용시 공고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는 경우를 비서관 및 비서 임용, 초빙의 경우에 외국인 임용,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기구·직제 개편으로 재임용 시 등 4가지로 규정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임용절차·시험방법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4) 안 제10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이 인정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원하는 경우 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함.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명금길)

동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신규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가 제정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동안 별정직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적 요소를 삭제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항목을 신설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조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등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이전 조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 왔던 별정직 직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여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